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토론용 초안]

2012. 4.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토론용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및「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강원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부모”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권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 등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기본권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차별받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생활 보장의 권리)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생활을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치 않는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긴급한 상황 이외에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으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없다.

⑦ 학교의 장은 탈의실 등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윤리적 판단 등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양심에 어긋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 강요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사 및 개성을 표현할 권리) ① 학생은 타인의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방송, 신문 등 학교 내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⑦ 학교의 장은 두발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으며, 복장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이는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

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2.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한 치료 지원

제10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이나 현장실습 시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금주·금연 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치료 지원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지며,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치 활동이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보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

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참여의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 대표와의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학교규정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6조 및 제8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13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참여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학부모를 교육하고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휴식 및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으며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학습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① 학생은 성실히 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학생은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수·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을 바르게 할 책임) ①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② 학생은 폭언,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생은 음주, 흡연, 불법 의약품 사용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① 학생은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정한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② 학칙 등 제 규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 통신 윤리를 지킬 책임) ① 학생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음란물 유포, 비방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불법·유해물을 교내에 반입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존중

제1절 인권교육

제25조(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6조(홍보) 교육감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8조(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 ① 교육감은 본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과정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9조(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교육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인권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인권증진계획

제31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 및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인권증진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증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인권위원회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3.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 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4. 학생인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5.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6.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7. 이 조례에 반하는 학칙에 대한 개정 권고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 제정안에 관한 심의

9.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34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2.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3.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4.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5.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학생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2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6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제38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 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 사실 및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0조 (학생인권 침해사안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학부모,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 관계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조사·질의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 침해사안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 조사 후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

계인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유지 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관계인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및 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1절 교직원의 권리

제44조(기본 원칙) ① 교직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② 교직원의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③ 교직원의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교육에 관한 자주·독립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

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교직원은 교육 등 근무와 근무외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제46조(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직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교장실,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② 교직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참여의 권리) ① 교직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교직원회를 운영하며 교직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직원은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제48조(양심과 종교 및 사상의 권리) ① 교직원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교직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4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교직원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제5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① 교직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51조(표현의 자유) ① 교직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언론기고, 대담, 토론, 사이버 상의 표현, 기타 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교직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와 결사할 자유를 가진다.

제5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직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활동과 근무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범위 이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장은 교직원의 편의·휴식을 위하여 남·여 휴게실 및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직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령에 의한 징계 이외에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교직원은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54조(교직원의 보호) ①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법률지원단 설치·운영
3. 교권보호지원단의 설치·운영
4. 단위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5. 긴급전보

6. 요양 및 치료 지원
7.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소송 비용 지원
8.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9. 기타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는 조치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직원 고충 처리제도, 책임 보험 등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직원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직원의 권리 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분쟁 조정을 위해 교육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③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교권보호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교권보호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직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교권보호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한다.

③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지시나 사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5.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직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6. 학교의 장은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직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제2절 교직원의 책임

제59조(교직원의 책임) ① 교직원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나 정치적 신념,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직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교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6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절 학부모의 권리

제60조(학부모 정보 보호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① 학교의 장은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를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②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학부모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는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학부모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1조 (정보 열람 및 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 ① 학부모는 학생의 동의하에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학교에 대하여 자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2조(학부모의 알 권리) ① 학부모는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① 학부모는 학교 교육 계획 및 각종 학교 행사활동 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하여 학부모회를 두며, 학부모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학부모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급단위 이상의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학부모의 책임

제64조(학부모의 책임) ① 학부모는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 구성원이 정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적인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교원의 교육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공동 책임을 갖는다.

제65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